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 내·외적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되는 부서간 정원을 직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복식부기, 균형발전 등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1)

구분	합계	정무직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정 전	609	1	478	4	26	124	147	114	63	1	22	17	90
개정 후	615	1	485	5	25	124	150	116	65	1	22	17	89
증감	+6	-	+7	+1	△1	-	+3	+2	+2	-	-	-	△1

- 총 정원 : 609명 ⇒ 615명 (+6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597명 ⇒ 603명 (+6명)
 - ▶ 의회사무과 정원 : 12명(변동없음)
- ※ 현재 조례 조문상 정원이 615명으로 조례 개정 없이 별표1의 직급별 정원만 조정함.
 조례 조문상 정원은 615명이나 2008.2월 현재 실제정원은 2007.7.30 기한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4명(6급1,7급2,8급1)과 2007.12.31 기한 사업별예산 한시정원 2명(7급1, 8급1)이 줄어든 609명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조정
 - 본청 5급 △1 ⇒ 4급~5급 +1

- 부서신설에 따라 본청 기능 강화 : 총 7명
 -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업무 보장 : 7급 1명
 - 레포츠 관련 업무 보장 : 7급 1명
 - 관광 및 경제업무 보장 : 7급 1명, 8급 1명
 -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수행 : 8급 1명
 - 지역개발 분야 보장 : 9급 1명
 - 직속기관 8급 $\Delta 1 \Rightarrow$ 본청 8급 +1(농촌개발사업 보장)
 9급 $\Delta 1 \Rightarrow$ 직속기관 기능10급 +1(농기계 대여)
 - 사업소 기능9급 $\Delta 2 \Rightarrow$ 일반직 9급 +1(시설직 보장)
 기능10급 +1(직급채정기준 부합)
 - 읍면 6급 $\Delta 5$ (재무담당) \Rightarrow 본청 6급 +5
 - 본청 9급 $\Delta 5 \Rightarrow$ 읍면 9급 +5(읍면 정원(세무업무) 보전)
- 나. 부칙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 : 총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 복식부기 3명 :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기한 2008.12.31)
 - 균형발전 2명 : 6급 1명, 7급 1명(기한 2008.06.3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1.10~1.30(20일간), 결과요약서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입법 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사항
지역도시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업무 보강을 위해 면에 시설직(건축) 정원 증원 : 2명(미탄, 방림) 	<p style="text-align: center;">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총액인건비 미확정 및 정부의 조직 축소 전망으로 당분간 인력증원 곤란, 현 정원(615명) 유지 - 향후 자연 감소 정원 발생 시 활용 방안 모색
봉평면장 . 대관령면 이장협의회장 대관령면 번영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재무담당을 폐지하여 본청의 담당으로 직렬을 새로 조정하여 신설하려는 안은 읍면의 재해대비와 업무의 현지 대응의 요구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읍면의 정원을 줄이려는 개정안은 문제 있음. - 현재 평창읍과 진부면에 건설담당을 두고 있듯이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역인 봉평면과 대관령면의 경우 건축과 토목업무가 중요시되고 늘어나는 업무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재무담당을 건설담당(시설6급)으로 하고, 건축과 토목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면의 정원조정없이 담당부서만 변경(재무담당⇒건설담당)하여 전문성 확보로 현실에 맞게 기능 보강 	<p style="text-align: center;">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정원의 총수 무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5(재무담당 폐지) ⇒ 7급 이하 +5(실무직원 보강) - 읍면 특성인 종합행정 운영을 위해 7급 이하 직원 보강 - 세무직 읍면 순환보직 가능 및 직원없는 6급 재무담당 부재시 발생하는 업무공백 등의 문제점 해결 ◦ 현재 6급 현원이 행정직으로서 건설담당 신설시 시설직 보직 불가능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행정직의 경우 토목과 건축 전문분야의 지식 부족으로 업무협조 곤란 - 고유업무 없는 담당만 늘어남. ◦ 6급 현원인 행정직 퇴직 후 시설직 보직 시 면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3명의 시설직 배치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토목 및 건축공사 본청 시행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78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5	603	285	141	44	19	114	12
정무직	소계	1	1	1				
	군수	1	1	1				
일반직	소계	485	478	252	90	17	17	102
	4급	3	3	1	2			
	4~5급	2	2	2				
	5급	25	23	10	4	1	1	7
	6급	124	122	67	16	4	5	30
	7급	150	148	86	27	6	5	24
	8급	116	115	61	29	4	2	19
	9급	65	65	25	12	2	4	22
연구직	소계	1	1	1				
	연구관							
	연구사	1	1	1				
지도직	소계	22	22		22			
	지도관	1	1		1			
	지도사	21	21		21			
별정직	소계	17	17		17			
	6급상당	16	16		16			
	7급상당	1	1		1			
기능직	소계	89	84	31	12	27	2	12
	기능6급	3	3	2		1		
	기능7급	8	7	3	1	2		1
	기능8급	15	14	6	1	4	1	2
	기능9급	27	26	8	6	9		3
	기능10급	36	34	12	4	11	1	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제1789호)</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정원)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정원관리 기관</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직 급</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6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7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8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9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집행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body> </table> <p>②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복식부기 3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6급 1명, 7급 1명(균형발전 2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2014평창동계올림픽 4명)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에는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하며, 7급 1명, 8급 1명(사업별예산제도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정원관리 기관	직 급					비고	계	6급	7급	8급	9급	집행기관	11	3	5	3	-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제1789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정원관리 기관		직 급						비고												
	계	6급	7급	8급	9급															
집행기관	11	3	5	3	-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별표 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2조 [별표 1]

2. 정원의 변동 내역

-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조정
 - 행정·사회복지5급 △1 ⇒ 행정·사회복지4급 +1
- 사업별예산, 생활민원, 체육, 관광, 경제, 지역개발 분야 : 6명 증원
 - 행정7급 2, 행정·시설7급 1, 행정8급 1, 전산8급 1, 행정·녹지·시설9급 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30,179	
○ 인건비(100)	195,967	
- 기본급(01)	119,592	○ 본봉 4급 3,128,300원×1명×12월=37,539,600원 5급 2,622,500원×△1명×△12월=△31,470,000원 7급 1,708,400원×3명×12월=61,502,400원 8급 1,286,800원×2명×12월=30,883,200원 9급 994,800원×1명×12월=11,937,600원 ○ 정근수당 110,392,800원×2/12×50%=9,199,399원
- 수 당(02)	23,844	○ 초과근무수당 7,210원×6명×30시간×12월=15,573,600원 ○ 정액수당 · 가족수당 30,000원×8명×1.08×12월=3,110,400원 · 정근수당가산금 - 20년이상 25년미만 110,000원×1명×12월=1,320,000원 -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2명×12월=1,920,000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수 당(02)		-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1명×12월=720,000원 -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2명×12월=1,200,000원
- 정액급식비(03)	3,360	130,000원×6명×12월=9,360,000원
- 교통보조비(04)	9,000	○ 6·7급 130,000원×3명×12월=4,680,000원 ○ 8·9급 120,000원×3명×12월=4,320,000원
- 명절휴가비(05)	11,039	110,392,800원×1/12×120%=11,039,280원
- 가계지원비(06)	22,999	110,392,800원×1/12×250%=22,998,500원
- 연가보상비(07)	6,133	110,392,800원×1/12×1/30×20일=6,132,900원
○ 물건비(200)	13,620	
-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1)	3,000	350,000원×1명×12월=4,200,000원 100,000원×1명×12월=△1,200,000원
- 직급보조비(204-02)	10,620	○ 4급 400,000원×1명×12월=4,800,000원 ○ 5급 250,000원×1명×12월=△3,000,000원 ○ 7급 140,000원×3명×12월=5,040,000원 ○ 8·9급 105,000원×3명×12월=3,780,000원
○ 이전경비(300)	20,592	
- 성과상여금(303)	8,780	1,463,410원×6명=8,780,460원
- 연금부담금(304-01)	9,383	110,392,800원×0.085=9,383,400원
- 국민건강보험금 (304-02)	2,429	110,392,800원×0.022=2,428,640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